

#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3. 10. 23.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14:00~17:5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88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2023년도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88호 『거래정보저장소(TR)의 정보제공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요청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보고안건 제44호 『대표계좌의 실제투자자 정보를 거래소 시장감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를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한국거래소가 요청을 하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시장 감시에 활용한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실제 뒤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같은 세력인지 여부를 봐야만 그것이 통정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진 세력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앞선 승인요청 내용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음.

○ (위원)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시장감시에도 대표계좌의 실제투자자 거래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함.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대표계좌에 대한 시장감시 업무는 광의의 심리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02조제1항1호를 보면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심리를 구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계좌에 대한 시장감시가 이상거래 심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함.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오늘 보고 드린 것의 요체라고 볼 수 있음. 첫 번째, [1설] 하에서 의미하는 것이 법령에서 용어 자체를 구분하므로,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좁게 해석하는 취지임. [2설]의 경우에는 제2항에 있는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는 제1항에서의 범위보다 광범위한 만큼 심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요청이 가능하다는 해석임. 이렇게 문언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를 봤을 때 금융실명법 규정이 도입된 것이 2006년이지만 CFD 계좌와 같은 대표계좌는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변화된 환경까지 포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참여자) 말씀하신 것처럼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면 약간 부조화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사실 CFD계좌 거래의 특성 때문에 필요성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임. SG사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CFD계좌는 여기 적힌 것처럼 외국증권사의 대표계좌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자는 사실 가려져 있음. 오히려 실명법에 따르면 실제 거래자의 계좌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좌가 어떤 계좌번호인지,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은 오히려 거래소 시장감시단계에서 봐야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 (위원장) 사실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시장감시의 정의, 심리의 정의가 자본시장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음. 이 부분을 협의(狹義)로 해석할 것이냐 광의(廣義)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제404조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감시를 협의(狹義)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듦. 기본적으로 투자자 정보의 모든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 단위의 정보를 내는 것이고,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CFD계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바와 같이 [2설]로 해석해서 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제44호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89호 『○○○○○○(주) 등 6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우선, 이 사건 조치원인사실과 기존의 OO 무역 금융 펀드 관련 위법행위로 처벌된 대상 사실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람. 기존에 형사처벌된 OO 무역 금융 펀드 관련 위법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 행위 등으로 OOOOOO(주)이 투자한 투자대상에 부실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펀드판매를 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조치원인사실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상황에서 모집하였다는 것임. ▲▲▲▲▲(주)은 OO 무역금융 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처벌과 제재를 받았으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액 배상하였음. 따라서 비록 그 규제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제재는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조치는 재고되어야 함. 모집행위 및 모집금액이 없음에도 모집행위를 전제로 한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 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6월 이 건 펀드의 판매계약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음. 이로써 이 건 펀드의 판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 이번 조치원인사실은 이 건 펀드의 판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모집행위임. 따라서 판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판단한 이상 그리고 ▲▲▲▲▲▲▲▲(주)이 판매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그 수익증권을 회수하여 ▲▲▲▲▲▲▲▲(주)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모집행위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야 함. 이와 같이 판매계약의 무효 및 수익증권의 회수를 통해 더 이상 펀드 모집행위나 모집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모집행위나 모집금액을 전제로 한 범위반을 판단하거나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이번에 제재가 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감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됨. 첫째,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은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두 번째로는 운용기간의 문제임. 이 건 과징금은 모집금액, 부과비율,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됨. 이 건 펀드의 판매시점은 2018년 11월과 12월임. 그리고 ▲▲▲▲▲▲▲▲(주)이 투자자들에게 40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회수한 시점은 2020년 9월과 10월임. 만일 이번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그 운용기간에 ▲▲▲▲▲▲▲▲(주)이

수익증권을 회수하여 더 이상의 운용수익이 없었던 기간. 즉, 수익증권 회수 시점부터 조치사전통지 시행일인 2023년 8월경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해 주시기 바람. ▲▲▲▲▲▲(주)은 이번에 문제된 두 개의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임직원에게 내부징계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 이와 같이 이미 내부징계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 행정적 제재, 손해배상, 재발방지의 노력 등 그동안 OO 무역금융 펀드와 관련하여 ▲▲▲▲▲▲(주)에 있었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람. 앞서 말씀드린 사정을 고려하시어 ▲▲▲▲▲▲(주)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낮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림.

- (위원) 매매계약 체결이 착오의 이유로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제재를 하는 것은 모집과정에서 50인 이상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청약의 권유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행위 자체도 없어진 것으로 봐야 되는지?

▶ (진술인) 맞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제재하는 규정의 목적에는 차이가 조금 있음. 그러다 보니 제재목적. 즉, 행위가

있었던 그 사정만을 놓고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의 필요성이라든지, 근거가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 스스로도 관련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후속으로써도 제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유도 충분히 감해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임.

○ (위원)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쭙어 보겠음. 금융투자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이것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어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으니 귀책사유에 대한 행정제재를 부과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 (진술인) 저희로서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 행위 자체가, 매매계약 자체가 소멸하였다면 충분히 그러한 판단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임.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재의 필요성이라든지, 제재의 양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생각임. 실제로 그런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번 지적을 통해 금융감독 당국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였고 향후 업무수행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음.

다만, 본 건은 법리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임. 먼저, 당사의 본 건 사모펀드 판매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즉, 본 건 3개의 사모펀드 모두를 통산하여 모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겠음. 공모규제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발행인이 다수인 경우에도 모집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규정은 본 건 사모펀드 판매 이후인 2021년 2월9일에야 비로소 도입·시행되었음. 그런데 본 건 3개의 사모펀드는 각각 별개의 발행인임. 따라서 당사의 본 건 사모펀드 판매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펀드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함. 그런데 본 건 사모펀드 각각의 투자자 수는 모두 50인 미만임. 여러 펀드들로 구성된 소위 시리즈펀드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인정한 판결례가 있음. 하지만 해당 판결례는 소위 OEM펀드들이 모두 동일한 종목의 회사채를 투자대상자산으로 편입한 사안에 대한 것임. 그런데 본 건 사모펀드는 OEM펀드가 아니며, 본 건 사모펀드가 편입한 'OO CCC 1호'는 블라인드 펀드로써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펀드자산으로 편입하였고 이는 수시로 변동하였음. 이와 같이 관련 판결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본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한편 개정 전 시행령 제129조의2에 의하면 증권의 발행이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 하지만 본 건 3개의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의 투자수요에 맞춰 그때그때 설정된 펀드들로써 이들 간에는 어떠한 상호관계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본 건 사모펀드를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설정된 사실상 동일한 증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금감원은 당사가 본 건 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발행에 있어 주선인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429조가 적용된다고 함. 하지만 펀드의 판매회사는 자산운용사와 모집주선계약이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판매에 대한 대가는 펀드가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판매수수료 형식으로 수취함. 따라서 당사는 단순한 판매회사에 불과하고 주선인으로 볼 수는 없음. 설사 당사가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429조가 당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제429조는 명확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본 건 사모펀드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발행인으로 판매회사인 당사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설사 당사가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429조에 근거하여 당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금감원의 취지는 결국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나 권한 인지의 여부를 떠나 제429조에 주체로 언급되어 있다면 과징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제429조에 언급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의무와 권한범위 내에서 과징금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주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제429조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관한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함. 당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관련하여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야 함. 하지만 당사는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의무도 권한도 없었으므로 본 건 사모펀드의 판매에 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 그리고 본 건 사모펀드를 판매할 당시 발행인이 상이한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행되고 있지 않았고 본 건 사모펀드 판매 당시까지 펀드 판매회사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전혀 없었음. 따라서 당사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고의는 물론이고 중대한 과실도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은 본 건 사모펀드의 모집금액 산정방식에 의문이 있음. 즉, 본 건 3개의 사모펀드는 2019년 1월, 2월, 3월에 각각 설정되었고 각각의 투자자 수는 42명, 46명, 31명임. 공모 여부는 투자 권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6개월 내의 공모에 의하지 않고 투자권유를 받은 자를 통산하여 판단하는데 이에 의하면 최초로 설정된 'OO BBBB 1호'는 투자자 수가 42명에 불과하여 사모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렇다면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모집금액은 1호 펀드 설정금액인 146.5억 원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과징금 부과 기준 제7항은 당해 증권의 주선인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 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사는 본 건 사모펀드의 판매대가로 발행인인 본 건 사모펀드나 OOOOOO(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전혀 없음. 그렇다면 설사 당사가 자본시장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과징금 부과 비율 하향조정사유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증권신고서 미 제출과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당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 금액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또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당사는 본 건 사모펀드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가입금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선지급하였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추가보상을 하여 선제적으로 배상을 완료하였음. 이에 관련 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당사의 이러한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을 감경사유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위원) 자본시장법 제119조제3항의 발행인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말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발행인은 투자신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발행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그러한 배경에서 이 항에서 같다고 적용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음. 저희가 통상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의 경우에는 운용사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항에서 이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항에서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의 취지를 넓게 보신 것 같은데, 어떠신지?

▶ (진술인) 기본적으로는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됨. 그러면 증권신고서 기재와 관련된 내용을 떠나서 펀드에 있어서 발행인을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남게 되는데, 그 경우에 자산운용사로 보게 되면 자산운용사는 수많은 펀드들을 설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모두가 다 동일한 발행인에 의해서 발행된 증권이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래서 법리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투자신탁이라고 하면 법적인 인격이 없는 것이고 다만 법적인 실체는 신탁회사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됨. 그래서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각 펀드들이 다 별도의 발행인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대상자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의 요지는 OOOOOO(주)이 시리즈펀드와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공시위반의 실질적인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것임. 대상자가 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엄격한 내부통제를 받음. 집합투자업자로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OOOOOO(주) 역시 직

무전결규정 등 내규를 두고 해당 내규에 따라서 부서별, 담당자별 업무분장이나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그런데 OOOOOO(주)의 경우에는 운용부서와 판매부서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직무전결규정상 공시업무 등을 포함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같은 업무는 모두 판매부서인 마케팅본부 소관 업무로 정해져 있음.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본부는 대표이사 직속부서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관여할 부분은 없음. 실제로 각종 신고 등의 업무는 모두 마케팅본부 소속 임직원에게 의해 행해졌음. 이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된 신고서 등의 작성주체나 발송주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에서 OOOOOO(주)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인정된다면 그 위반행위의 실질적 행위자는 마케팅본부 소속 임직원이거나 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수행할 권한도 없었던 대상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임. 또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면 결국 시리즈펀드라는 이유가 OOOOOO(주)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는 유일한 이유로 보임. 그렇지만 각각의 펀드가 법적, 계약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펀드이고 실제로도 독립적으로 운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동일한 펀드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임. 아무쪼록 대상자가 실질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신 후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첫 번째 ▲▲▲▲▲▲(주)은 PBS사업자. 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고 있어서 단순한 장외파생상품 (TRS) 거래 상대방의 지위에 있지 않고 좀 더 나간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이신지?
  - (보고자) ▲▲▲▲▲▲(주)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나서 수사가 완료된 사안으로 단순히 TRS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OO펀드가 1차, 2차 구조화를 통해서 복수의 펀드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실을 은폐하고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은 그 두 차례의 구조화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같이 기획하고 설정을 담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TRS 증권사와도 차이점이 있음.
- (위원) PBS사업자 지위도 가지고 있다, 단순판매자보다 조금 더 나간 지위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신지?
  - (보고자) 그러함. 법원은 ▲▲▲▲▲▲(주)에 대해서는 OO 무역 금융 펀드를 사실상 설정한 것으로까지 표현을 한 바 있음.
- (위원) 주선인의 주선행위 등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단순판매사보다 조금 더 나간 펀드설정과 관련된, 발행조건 등과 관련된 것에 관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여쭙봄.
  - (보고자) ●●●●●을 말씀드리면 만기 자체를 아예 적극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판매하자고 오히려

은행 쪽에서 요청한 것으로 OO이 그에 따라 맞추어 상품을 출시했다는 진술이나 확인이 있었고 ◆◆◆◆(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TRS거래증권사로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대로 ◆◆◆◆(주)은 생략하겠음. ◆◆◆◆ 같은 경우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5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설정일을 달리해서 설정하기로 운용사와 협의한 것이 분명하고 마찬가지로 ★★★★★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분할해서 발행한 것이 맞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판매사인 점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기존에 저희가 일관되게 주선인으로 판단했던 요건에는 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포함을 했음. 또 얼마 전 판결 같은 경우에도 주선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증선위와 법원의 판례가 쌓이면서 단독 판매사나 사전 수요조사 등 관여가 있는 경우를 주선인으로 보고 기존의 주선인의 지위와 관련한 조치 내용과 다 동일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포함하였음.

- (위원) ◆◆◆◆의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50인이 넘어가면 이 지점은 1호, 이 지점은 2호 이런 식으로 동일한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고, 반면에 ★★★★★은 조금 전에 답을 해 주실 때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음. 왜냐하면 펀드가 3개인데 이 3개가 2개의 펀드로 들어가면서 비중이 다른데, ★★★★★과 ◆◆◆◆의 경우에는 주선인의 역할의 정도 같은 실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 특히 ★★★★★의 경우에는 제안서대로 펀드가 실제로 운용이 되었고 비중이 다르지 않은지?

- (보고자) 그 부분 사실관계를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 경우에는 판매제안서에 특정된 펀드 2개와 펀드에 투자한 비중 자체가 3개 모두 동일함. 결국 동일한 제안서로 3번 판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OOOOOOO(주)으로부터 다르게 운용했다든가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 제안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15시 33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 (위원장) 제189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다만, 주선인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본 건에서의 주선인 책임 성립은 동의 하지만 향후 주선인의 여부 판단, 책임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0호 『OOOOOO(주) 및 (주)□□□□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OOOOOO(주)이

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함. 다만, 본 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DLS 발행 시에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수사기관 통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위주로 간략히만 말씀드리고자 함. 본 건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본 건 DLS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고, 둘째, ○○○○○(주)이 본 건 DLS를 모집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본 건 DLS 발행 당시의 규정상으로는 같은 종류 증권이나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소 불명확하였고, ○○○○○(주)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본 건 DLS를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임. 나아가 ○○○○○(주)과 그 직원들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수사기관 통보 조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임. 동일 증권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부분임.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대한 규제는 연역적으로 쪽 변동이 되어 왔음. 이른바, 미래에셋 베트남 SPC사건 이후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이라는 판단기준이 2018년 5월1일에 도입이 되었음. 그러나 본 건 DLS와 같이 증권의 기초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권의 기초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9일에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하였고 그 규정은 2021년 5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정리하면 기존에 채무증권의 동일성 판단기준으로써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은 2018년 5월1일에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만 집합투자증권, DLS 이런 것 관련해서

기초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2021년 5월10일부터 규정이 마련됐다고 이해가 됨. 따라서 위 시행령 마련 이전인 2018년 11월부터 발행되었던 본 건 DLS 당시에는 ○○○○○○(주) 회사와 직원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다음은 이 자리에 출석한 당시 담당 부장인 ☆☆☆씨의 E-mail임. 담당자의 E-mail. 특히, 붉은 박스를 보면 본 건 DLS 발행 당시에 ○○○○○○○(주)의 직원들은 시리즈 이슈(issue)를 신경 쓰면서 규제위반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회차별로 Loan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언급했음. 그리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PT와 저희가 먼저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DLS는 회차별로 편입되는 ㄷㄷㄷㄷ펀드 시리즈가 달랐고 ㄷㄷㄷㄷ펀드에 편입된 기초자산은 시리즈별로 투자대상이 달랐다는 점에서 설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ㄷㄷㄷ 펀드 관련해서 2021년 2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증권의 기초 자산 등이 별도로 있는 증권을 발행한 경우,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하여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반 동기를 '고의'에서 '중과실'로 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건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됨. 끝으로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무엇보다 당사는 본 건 DLS 발행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구조로 발행된 다른 DLS 관련해서 이미 7차례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습시다만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한 번도 받지 않았음.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과징금을 받게 되고

또 이전과는 달리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제재가 있는 이후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거에 DLS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유독 본 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 통보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법리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본 건 DLS 발행 당시에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했고 본 건 DLS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초자산의 다른 면이 있어서 기초자산과 투자위험이 달랐다는 사정이 있음. 따라서 과연 본 건이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적어도 발행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고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 통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함. 이어서 ☆☆☆의 진술을 올리도록 하겠음.

- ▶ (진술인) 저는 ○○○○○○(주) ♥♥♥♥♥♥♥♥에 근무하면서 본 건 DLS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 ▽▽ ▽▽로 근무하고 있는 ☆☆☆임.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움. 다만, 이번이 위원님들께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어 염치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 본 건 DLS 발행 당시 저는 미래에셋 베트남 건으로 공사로 규정이 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음. 운용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무역채권의 구성 pool이 매 회차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본 건 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상품구조상 동일 증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음. 특히, 당시에는 ELS와 같이

매일매일 기준가가 달라지는 자산 등에 대하여 동일 증권 개념이 없었으며 기초자산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만 공모규제 위반이 발생해 왔다고 생각하였고 규제 상으로도 매번 투자대상이 달라지는 본 건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라거나 동일 증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음. 만약 규제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당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이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시리즈 규제 위반 이슈(issue)에 대해서 인지하고 당시 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후회도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음. 저 개인적으로 본 DLS를 발행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본 건 DLS발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음. 저는 증권업계에 몸담은 지가 22년차가 되어 감.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회사에서 내부통제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거나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법위반을 해서 제재를 받은 사항도 없음. 본 건 조치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진행을 안 했을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음. 저는 올해 ▽▽▽▽▽▽으로 이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음. 그리고 어쩌면 올해 인사심사를 통해서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런데 5년 전 이 건으로 인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내려져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며칠 동안 불안한 마음이 계속 이어졌음. 잘 아시겠지만 최근 금융업계 쪽에 임직원들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건 수사기관 통보로 한 가정의 가장인 저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는 상황임. 저나 다른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다는 인식 하에 본 건 DLS를 발행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음. 이번 한 번 더 선처해 주신다면 다시는 공사로 이슈(issue)는 물론이고 어떠한 범위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부디, 이 건이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 포함한 당시 임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 아까 대리인께서 진술하신 취지는 법개정 이전에는 기초자산이 달리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 자체가 새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인적 입법이라 해도 인지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신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일부 펀드의 경우 상황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진술인) 2020년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항구가 다 폐쇄됐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무역 자체가 정지(stop) 되어 버렸음. 그 이후에 운용사가 각 차주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음. 그래서

최초 EOD가 발생한 이후로 원금 기준으로 한 17% 정도가 상환이 됐고, 올 4월까지 상환을 받았고 지금도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 그리고 운용사로부터 듣기로는 내년 정도 되면 또 일정 부분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음.

○ (위원) 그 상환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 (진술인) 저희가 운용사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84% 정도는 상환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음.

○ (위원) 어쨌든 일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 (진술인) 현재로 봐서는 100% 상환되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상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임. 그리고 현재 14개 차주 정도가 있는데, 운용사의 기초자산으로 4개 정도 범주(category)를 나눠서 일정 부분 보험도 청구하고 있고 워크아웃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보를 받은 것에서 처분도 진행하는 등 회수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위원) 본 건 DLS와 관련해서 보험 면책사유가 광범위하다는 점, 그다음에 보험청구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 또 환매(Buy-back)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상품설명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진술인) 최초에 보험이나 환매(Buy-back)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용사한테 왜 보험청구를 하지 않느냐고 여쭙보니 운용사에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해도 받는 것이 쉽지가 않고 소송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운용사의 재량으로 일정 부분 상환할 수 있는 채권들은 상환을 받고, 그다음 담보를 매각할 수 있는 채권들은 담보를 매각하고, 이도저도 안 되는 것들은 보험사에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14개 차주 중에서 3개 차주에 대해서는 보험을 청구해 놓은 상태임. 그런데 2020년도에 보험을 청구했음에도 현재까지 보험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음. 그리고 환매(Buy-back)의 경우에도 저희가 운용사와 협의하는 중에 환매(Buy-back)가 처음에는 필수 의무사항이라고 논의를 하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운용사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재량행위라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미상환된 DLS건에 대해서는 재량이라는 것을 확인 되고 나서 발행된 상품들이고 그 이후에 미상환된 상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EOD가 발생했을 때 운용사한테 환매(Buy-back) 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재량이라고 하다 보니, 저희가 가능한 받으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어서 그 이후에는 운용사를 통해서 상환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임.

- ▶ (진술인) 참고로 덧붙여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본 건의 경우에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은 □□□□(주)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판매가 되었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투자자에게 잘 전달되는데 ○○○○○(주) 쪽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일단 투자자와의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러니까 Loan이 구분이 된다고 답을 받으신 건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런데 본인께서 이 Deal을 발굴을 하셨는데, cross-Class and/or cross-Series liability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지?

▶ (진술인) 초반 큰 상황 자체에는 제가 관여를 하고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쪽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음.

○ (위원) 지금 ☆☆☆씨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회차별로 Loan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어떠한지? 보험 관련해서 조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환매(Buy-back)가 의무는 아니고, 물론 상품설명서는 □□□□(주)이 찍은 상품설명서니까 계속 그쪽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방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와 직접 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말씀 하실 건지?

▶ (진술인) 제 역할은 초반에 딜(Deal)을 소싱(Sourcing)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소싱(Sourcing)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투자자와 최초에 접촉(contact)하는 것까지가 저의 주업무였음. 사실은 제가 20몇 년 동안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는 구조화 전문이 아니라 영업 전문이었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알면서 하지는 않았음. 최초에 업무(brief)적인 메모(memo)를 가지고 접촉(contact)하고 이후의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넘기는(toss) 것까지가 제 역할이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몇 가지 좀 있었다고 생각됨.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오늘의 진술은 제가 대표진술을 하고 관련해서 FFF 변호사가 보충진술을 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 이분들은 제출해 드린 개인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기관의견서와 사실 동일한 취지이기 때문에 기관 진술로 개인진술도 같음하도록 하겠음. 이미 자조심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증선위에서는 핵심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함. 큰 틀에서 첫 번째로는 이 사건에서 발행된 DLS가 동일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주)의 지위가 주선인

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기존의 사례들과 이번 사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 네 번째로는 □□□□(주)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고의’와 ‘중과실’이 없다는 취지를 설명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징금 액수 산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음. 현재 □□□□(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 내용은 □□□□(주)이 ○○○○○○(주)을 위한 주선인으로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모집이 불가한데도 12개 회차의 DLS를 권유해서 총 2,100억 원을 모집하였다는 취지임. 이에 대해서 과징금 6억 3,160만 원과 관련 임직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이번에 발행된 사모 DLS가 동일증권이 아닌 취지는 두 가지 객관적인 근거로써 확인이 가능함. □□□□(주)의 상품전략협의회 결의확인서 내용을 보면 대출자산을 운용하는 역외펀드의 펀딩니즈에 따라 DLS의 발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특히, 이 펀드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인 무역금융채권이 다르고 추가 발행되는 DLS와는 발행일, 기준가격, 투자위험, 수익률 등이 다름. 그렇기 때문에 동일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리고 과거에 이 동일증권 이슈(issue)가 되었던 사례, 그리고 이러한 동일증권 이슈(issue)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유발한 사례였던 미래에셋 랜드마크 사례와 최근에 판결이 선고되었던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사안들은 이미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증권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쪼개서 발행한 사안이었지만 본 건은 그와는 다르다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점임. 다음으로 ○○○○○○(주)에서

제공한 PPM(Private Placing Memorandum)의 내용임. ○○○○○(주)은 ○○○○○(주)이 매입한 ㄷㄷㄷㄷ펀드 발행 선순위 수익권을 투자대상자산 및 순자산 가치가 다르다고 □□□□(주)에 설명을 했음. □□□□(주)로서는 이번에 발행되는 증권, 나중에 발행되는 증권들이 서로 동일증권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음. 세 번째는 주선인 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주)은 특정금전신탁에 ○○○○○(주)이 발행한 DLS를 편입하였을 뿐임. □□□□(주)은 모집주선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모집주선 수수료를 수취한 바도 없음. 그렇기 때문에 □□□□(주)을 주선인으로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저희의 의견임. 저희가 주선인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책임을 물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판례에서 인정했던 사안들임. 판례에서는 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나 미제출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증권신고서 관련된 해석이나 적용상의 혼란이 있었는가를 가지고 판단 하였음. 주선인의 미제출 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경우는 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나 미제출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관련한 해석적용상의 혼란이 없었다고 보았음. 반면, 저희 사안은 동일증권 판단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하였음. 아시겠지만 판례는 동일증권 판단 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선언적·확인적 의미를 지니지 않음. 그래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안은 동일증권의 개념. 특히, 주선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주선인에 대한 미제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함. 판례상과 구별되는 증선위 조치사례를 말씀드리면 주선인이,

즉, 판매사가 통상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넘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뭔가 적극적인 발행행위에 대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취지로 당시에 통상적인 수수료인 1%보다 3배에 달하는 3%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안에서 주선인의 책임을 인정했음. 하지만 저희 사안은 통상적인 수준인 1.1%의 수수료만 수취되었기 때문에 증선위에서 주선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임. 특히, 주선인 등이 증권 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발행조건을 결정하는 등 발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가 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주)이 주도한 바가 전혀 없음. 이번 DLS 자체가 ○○○○○○(주)이 현지 운용사로부터 ㄷㄷㄷㄷ 펀드의 국내 상품화와 관련하여 독점업무수행 권한을 확보하고 본 건 사모 DLS의 기획 단계부터 현지 운용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전체 거래구조를 설계했던 사안임. 심지어 □□□□(주)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제안서에는 J J 운용사가 기초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SPC의 명칭이 “○○ Program”으로 명기되어 있기도 함. 그만큼 본 건 DLS는 발행인인 ○○○○○○(주)이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특정금전신탁의 DLS를 수동적으로 편입한 저희 □□□□(주)에게 발행과 관련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네 번째로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선인 그리고 동일증권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이 불명확했음. 발행되는 DLS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동일증권에 해당되는지가 불명확하였다는 취지임. 그렇기 때문에 □□□□(주)에는 ‘고의’, ‘중과실’이 없고 과징금의 부과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나아가서

현재의 조치사전통지서상 수사기관 통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범죄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동 범죄혐의는 고의범을 전제로 함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본 건에서는 수사기관 통보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제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오던 공시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공시위반이 형사범죄화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기존에는 증선위에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연루 되어 있는 공시위반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형사 이첩을 해 왔음. 과연 이번 사안이 형사범죄화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인지 상당히 의문이 있음. 게다가 과징금 제재를 부과하고 계셔서 사실은 금전제재로 인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증권신고서 미제출 책임을 인정한 판례 사안임. 이 판례는 서울고법 2020누39589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53419 판결임. 저희가 발표의 편의를 위해 판결문 번호는 기재하지 못하였으나 이 두 판결문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으로써 첫 회차 증권발행분을 기준금액에서 제외하였음. 본 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리즈별 첫 회차는 투자자 수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법원, 행정법원 판결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도 저희 사안에서도 첫 회차 발행분은 과징금 산정 대상 기준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음. 본 건의 경우 시리즈별 첫 회차를 제외했을 경우 총 2,000억 원 중 무려 580억 원이 기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상당부분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 DLS가 동일증권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FFF 변호사가 이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 ▶ (진술인) FFF 변호사가 이어서 간단히 보충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음. 조금 전에 언급된 파인아시아자산운용 관련 사안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5회차에 걸쳐서 판매된 펀드임. 같은 종목의 회사채가 편입되어서 15번의 모집신고서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하여 1,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인데 지금 이 사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사안임. 1심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고, 그 내용대로 확정이 되었음. 정당하다고 한 사안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사실상 증권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중요한 판시를 했기 때문임. 이 사안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판매사인 은행에서 미리 확보해 놓은 특정 채권임. 동일종목 채권을 일정한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수회로 나누어 시리즈펀드 형태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임. 그리고 개별펀드가 동일 회사채를 99% 담았음. 설정일이 다르지만 시간적 간격이 6일에 불과하고 만기일도 동일했음. 펀드의 예상수익률과 목표수익률도 모두 똑같았음. 수익률의 약간의 차이는 투자기간 차이에 불과했고 이런 점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봐서 법원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봤음. 사실 이것이 6개월 내에 쪼개기를

했고 일정한 발행계획. 규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쪼개기로 발행 판매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본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 건이 다르다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지금 □□□□(주)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서 드러나듯이 어떠한 단일한 계획을 전제로 발행과 판매가 이루어진 바는 전혀 없음. 발행일자들은 모두 흩어져 있고, 각 월별로 산재되어 있음. 그리고 간격이 붙어 있는 경우도 별로 없음. 더욱이 기초자산부터 동일하지 않음. 이것이 지금 동일한 해외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라고 하기 때문에 유사 동일성이 있지 않을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기초자산인 JJ ㄷㄷㄷㄷ펀드의 수익증권은 일종의 종류주식(種類株式) 비슷한 것으로 보이면 되겠음. 지금 하나의 펀드이지만 이 펀드의 상환에 기초가 되는 현금흐름이 다 분리되어 있음. 그 현금흐름은 해외에 있는 무역금융채권 pool 속에 있는 특정그룹의 채권들, 그래서 지금 시리즈가 1, 2, 3, 4, 5가 있다면 이를 위한 무역금융채권이 따로 있고 또 이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수익증권이 있고 2, 3, 4, 5가 별개로 있음. 그래서 사실은 현금흐름이 구분·독립 계산되기 때문에 상환 재원을 달리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회사채를 여러 펀드에 담아 넣는다든지, 아니면 미래에셋 사건처럼 동일한 해외 부동산 관련 대출을 쪼개서 담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 무역금융채권이지만 개별 무역금융채권의 채무불이행(default) 여부에 따라서 회수율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남. 실제 결과적으로도 지금 □□□□(주)이 총 14회차에 걸쳐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했습시다마는 그

중 8회차에 대해서는 정상상황이 되었음. 그런데 6회차에 대해서는 환매가 연기된 상황임. 그리고 그 6개에 대한 일부 상환 비율도 다름. 한 15~20%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도 상환비율이 다르고 기준가에도 큰 상이점이 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판례에서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너무도 큰 차이가 있음. 이 부분은 이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기준을 확대하고 고려사항을 구체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인정된다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법령개정 상의 혼란 이런 부분들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주)에 적어도 '고의'나 '중과실'까지는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EEE 변호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의 주도성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안의 실체가 갖는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과징금 통보를 하고 더욱이 수사기관 통보까지 하는 것은 좀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임. 이미 3~4개 증권사, 금융회사들이 특금판매나 펀드판매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이 사안은 그들 사안과 비교했을 때도 더 현격하게 차별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됨.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 (위원) 신고서는 사실 청약의 권유를 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기준은 사실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야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펀드가 판매되기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초 자산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말씀해 줄 수 있는지?

- ▶ (진술인) 저희가 아까 환매 연기와 관련해서 결과적인 차이만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충분히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음. 지금 저희 건은 시리즈별로 상환 채원이나 현금흐름이 되는 무역금융채권들 자체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pool 안에 속해 있는 채권의 회수율에 따라서, 실제 상환율에 따라서 실제 DLS의 상환율, 특정금전신탁의 상환율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물론 판매 당시에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목표수익률, 예상수익률 몇 퍼센트 플러스알파(±)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임. 어떤 특정한 사모사채나 이런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금융채권의 pool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리즈별로는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음.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희가 최초 판매할 때는 물론이고 두 번째, 세 번째, 14번째 판매를 할 때까지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음.
- (위원) 회차별로 기초자산이 다르다, 그러니까 Loan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결국에는 같음. 7.85%가 기초자산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DLS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45%인 셈인데 그것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음. 그렇게 기초자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지?
- ▶ (진술인) Pooling 되어 있는 무역금융 채권들이 정상적으로

다 회수가 되었을 때 7점 몇 퍼센트까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임. 그것도 14개의 회차가 완전히 다 일치하지는 않음. 그런데 거기에 스왑 (Swap) 관련 조건을 넣다 보면 4점 몇으로 차이가 남. 지금 이미 상황이 완료된 8회차도 0.1 내지는 0.2%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이것은 무역금융채권의 정상상황 여부에 달린 것이고, 또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사실 이것이 부실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회수되었다고 보시면 됨. 만기가 2020년 3월 이후에 도래하는 6개 회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무역 관련하여 신용이 악화되다 보니 실제 상환수익률이 달라진 것임.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상환되면 무역금융채권의 금리라는 것이 7%~9% 범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상상황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 (참여자) 저도 수수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어 보겠음. 금감원에서는 □□□□(주)의 제재대상 주선인 지위 인정 근거로 딜소싱 (Deal Sourcing)과 DLS 발행을 담당한 ○○○○○○(주)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수취한 점을 들고 있음. 수치상으로도 한 3배 정도 □□□□(주)이 더 많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 (진술인) DLS를 신탁으로 판매하면서 선·후취 1.1% 정도의 수수료를 □□□□(주)에서 수취했음. 할인해서 매수하면서 0.5% 정도가 DLS를 발행한 ○○○○○○(주)이 수취하고 또 ○○○○○○(주)은 이 DLS의 스왑거래를 통해서

0.2~0.3% 정도를 추가로 수취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말씀하신 3배 정도는 아님. 판매사와 발행사가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음. 일반 공모펀드에도 판매사가 운용사보다 많게는 6배, 적게는 2~3배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함. 이것은 판매행위 자체가 고난도, 더 많은 수고가 있기 때문임. 이것은 일반적인 상품에 대비해서도 판매사의 수수료가 더 높다고는 보고 있지 않음.

- (참여자) 통상적으로 운용사보다 판매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취득한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그리고 2021년도에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한 대로 확인적 입법이라 해도, 그러면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명백하게 범위반을 인지하고 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임. 신고서 미제출의 동기판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서 한 선례와 궤(軌)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 (보고자)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의 동일성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 왔고,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용

해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언상으로는 2021년 2월 이후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전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6시 54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 의결안건 제191호 『O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 변호사가 진술하겠음. BBB은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먼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적이 없음. 금감원은 2017년 11월경 ○○○○ 유상증자 성공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당사자는 유상증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음. 당사자는 중국 한족으로서 당시 한국에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의 직원도 아니었고 ○○○○○의 국내 투자 관련 통역을 도와 주고 있었음. 따라서 당사자는 회사의 중요사항인 유상증자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단순

통역인에게 유상증자 사실을 알려줄 이유도 없었다고 보임. 다만, 당사자는 중국에 있는 중국인 FFF의 부탁을 받고 FFF에게 증권계좌 7개를 전달한 적은 있음. 그런데 이 계좌들은 중국에서 FFF가 전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는 FFF가 위 계좌들에서 어떤 주문을 냈는지 전혀 알지 못함. 그리고 이 주문이 나온 장소는 그 IP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중국으로 확인됨. 다음으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당사자는 2019년 9월2일경 유상증자 공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고 III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음. 당사자의 주식 매매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사자는 2019년 6월25일부터 8월21일까지 @@@계좌를 통해서 ○○○○○ 주식을 1주도 매도하지 않고 오직 54만주 정도 매수만 하였음. 당사자가 위 기간 동안 주식을 매수하였던 이유는 약 1년 전인 2018년 6월경 중국 공장이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으니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고 2019년 8월말경 반기 실적이 공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임. 실제로 2019년 8월26일 반기 실적이 공시되었는데 당사자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고 주가도 큰 변화가 없었음. 그래서 주가 추이를 살피다가 2019년 8월28일 2,500주, 당시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0.25%, 극히 미미한 부분을 매도하였고 그다음날인 8월29일 11만주 정도 약 11% 정도를 매도하였으며 또 그다음날인 8월30일 88만주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약 88%. 거의 대부분을 매도하였음. 그리고 금감원은 지금 범행기간을 8월28일부터 9월2일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서 정보취득시점을 8월28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당사자가 정보취득을 8월28일에 했다면 악재성 정보를 취득하자마자 그날이나 그 다음날 대량 매도했을 것이지, 8월30일에 그렇게 대량으로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임. 그리고 두 번째로 당사자는 III이, III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III이라는 사람이 금감원에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유상증자 정보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II은 (주)○○○○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유죄 선고를 받은 적도 있고 당사자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임. 그리고 III도 ○○○○○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사자가 알고 있기로는 당사자가 대량 매도하기 전인 8월30일보다 먼저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III은 다른 경로(route)를 통해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여짐.

- (참여자) BBB씨는 타인명의 계좌 7개를 취합해서 중국 쪽에 전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명의자들에게 뭐라고 부탁 하면서 취득을 했으며,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개 계좌를 이용한 혐의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셨는지?

▶ (진술인) 그때 당시 2017년도에 제가 서울생활이 그렇게 경험도 많지 않아서, 그리고 한국 증권시장과 중국 증권 시장의 거래시스템이 달라서, 제 기억으로 중국에서는 T+1시스템인 것 같음.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고 한국은 오늘 사서 오늘 팔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 친구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해서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당시에 중국

사람에게 계좌 하나 빌려 주는 것이 뭐가 문제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시(關係·관계)를 통해서 부탁을 했으니까 그런,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보냈음. 심지어 III한테도 물어 봐서 III이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된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주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019년초에 舊(주)○○○○의 대표 III씨에게 해고를 당하여 퇴사하였음. 이후 용인 교회에서 일당 일을 다니고 있는데 찾아와 BBB이, 전라도 광주사람이 BBB이 주가조작을 하여 큰 손해를 보았는데 제 주식 내역과 같이 고발하여 한국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하여 제 주식 거래 내역을 주었음. 금융감독원 1차 조사 때 2017년 III씨가 舊(주)○○○○ 투자 하는 일을 도와준 중국인 친구가 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고 III씨에게 부탁한다고 하여 III씨가 제 것으로 부탁하여 III씨와 여의도에 있는 증권거래 통장을 만들어 III씨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음. 1차 조사 때 2019년 6월25일경 유상증자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를 받고 2019년 8월29일, 30일에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피했다고 하였는데 2019년 6월25일경에 정보를 받았으면 그때 손해를 조금 보고 팔지, 2019년 8월29일, 30일에 손해를 많이 보고 팔겠는지? 제 주식 관리해 준 ◀◀◀에게 2019년 8월28일경 춘천 유안타증권 CCC 지점장과 통화중 다음 주에 유상증자할 것 같은데 유상증자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데

어찌할 것이냐고 하여 다 팔아 달라고 하였음. CCC 지점장과의 2019년 8월경의 통화기록을 찾아보려고 그때 쓴 핸드폰을 찾아보았더니 2020년 12월13일 이전 기록은 자동 지워져서 통신사도 찾아가 봤는데 1년 전 기록은 줄 수 없다고 하여 서비스센터도 찾아가 보았고 서울구로에 있는 리커버리 데이터(recovery data) 복구해 주는 통화기록 복구 요청을 하였음. 핸드폰 기계에서 통화기록은 자동으로 밀려 복구가 어렵다고 함. 저는 III씨에게 사기 당하고 대출 받아 산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보고 나서 건설현장 일당일을 하면서 하나 있는 대학생 가르쳐 가며 살기 너무 힘들. 제가 유상증자를 여기 저기 알아본 것도 아니고 2019년 8월28일경 CCC 지점장과 통화하다가 내용을 들어서 팔아달라고 하였음.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와 2019년 6월25일경 저한테 III씨가 전달하였다고 하여 놓고 그 후 전화가 와서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가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III씨가 전화로 진술번복을 하였다고 함.

○ (위원) 8월28인가, 29일에 291,059주를 매도하신 것은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때 매도총액이 얼마였는지?

▶ (진술인) 금액은 오래되서 기억이 안남.

○ (위원) 그때 매도를 해서 이득을 좀 보셨는지?

▶ (진술인) 아님. 큰 소해를 봤음.

○ (위원) 그 매도로 큰 손해를 보셨다는 건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취득가보다 낮게 매도하셨는지?

▶ (진술인) 1억 몇 천 만원 손해 본 것으로 알고 있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DDD씨는 본인 자금 가지고 투자하신 것인지? 아니면 차입을 해서 투자한 것인지?

- (보고자) 본인 자금도 있고 주변에서 빌린 돈도 있어서 총 3억 원을 투자했고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매도함으로써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음. 3억 원 투자해서 2억 원 손실 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2호 『(주)OO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소액공모하고 자기주식 취득할 때 5%, 10%를 할인받아서 관련자들한테 넘어간 다음에 매도가 되어 부당이득이 거의 7억 원 가까이 나온 것이고, 5%, 10%도 결국은 취득가여서 부당이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자기주식 취득을 제3자한테 할 때 그렇게 할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 (보고자) 위원님 질문을 요약하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제3자에게 할인해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는 말씀이신지?

○ (위원) 맞음. 이 경우에는 5%임.

- (보고자) 제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자면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할인해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판단됨.

○ (위원장) 처분할 때 가격기준이 있을 것임.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가를 봤더니 가격이 너무 낮게 배정이 되었음. 자기주식 처분하는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주가가 혹 빠졌음. 5,000원대에서 3,000원대가 됐고, 그 전날 2,000 얼마인지 3,000얼마인지 해서 주가가 한 이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봤더니 중간에 공시도 있음.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증거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날짜를 중심으로 보면,

예를 들면 홍보하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음.

- (보고자) 알겠음. 내용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3호 『(주)000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